

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1. 4. .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제안이유

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·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

주요골자

-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목적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(안 제12조)
 - (1) 당초 :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
 - (2) 변경 :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이천시시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2조제3호중 “60제곱미터이하”를 “85제곱미터이하”로 한다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까지 시행한다
- ②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황	개 정 안
<p>제12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</p> <p>1.~ 2.(생략)</p> <p>3.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,000분의 3으로 함</p>	<p>제12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</p> <p>1.~ 2.(현행과 같음)</p> <p>3.-----85제곱미터이하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